

충청북도지역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6년 5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16일

3. 제안 이유

- 도내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WTO체제에서
내외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명품을 적극 지원하여
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 골자

- 기금의 재원 마련 및 관리·운용
 - 내부부 교부세와 도비로 기금 조성
 - 금융기관과 협약체결로 위탁관리 및 용자지원
-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자대상사업 선정
 - 기금은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선정된 명품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 도에서 심의 확정
- 용자금의 대출한도 및 조건
 - 기준

□	농특산물, 민·공예품	— 개소당 1억원 이내
	향토전통음식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금리는 연 2%

5. 검토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WTO 출범으로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대외 경쟁력을 잃고, 농촌 경제의 침체와 농촌 소득의 둔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지역의 대표적인 『1지역 1명품』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1지역 1명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로 하고, 기금의 재원은 내무부의 교부세와 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며, 지원 대상을 명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사업등에 지원하고, 용자 한도액은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육성 사업은 개소당 1억원 이내, 향토 전통음식 육성사업은 업소당 2천만원 이내로 용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선정, 기금운영등의 심의, 용자금 회수, 사후관리,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기금 관리 공무원, 결산 보고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 명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확대 추진과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경제의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첨 부

-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1부. "끝"